

기계기구심의위원회규정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기계기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 대학(원) 및 각 부서의 품목당 1,000만원 이상 기계기구 도입에 관한 심의와 품목당 3,000만원 이상 기계기구의 불용여부를 심의한다. 단, 산학협력단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원을 선정한다.
- ③ 위원회 간사는 대학(원) 및 해당부서의 행정실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목당 1,000만원 이상 기계기구 도입에 대한 사항
2. 품목당 3,000만원 이상 기계기구 불용에 대한 사항
3. 기타 기계기구의 도입 혹은 불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할 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소집할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물품청구 및 처분)

- ① 물품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의 물품구매청구서와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총무관리처장에게 신청한다.
- ② 불용신청 시 「물품관리규정」의 물품 불용신청서와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제팀장에게 신청한다.
- ③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최종 폐기 결정된 기계기구는 매각으로 처리한다.
- ④ 위원회 심의결과는 위원회 회의록 외에 해당 대학(원) 및 각 부서의 관련 기안 및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본 세칙의 시행으로 「교육용기계기구도입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